



명쾌한 수다

운동 선수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경우,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할까요?

〈사건의 개요〉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 A는 지인 B와 공모하여 C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 팀에게 1회에 불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주고, 무제한으로 베팅이 가능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베팅을 하여 수익이 나게 해 줄 테니 5억원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제안에 응한 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한 후 해당 경기에 베팅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은 처음부터 승부조작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고 이미 2군 투수로 밀려나 있었으므로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승부조작을 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의 제기

운동 선수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경우,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관련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선수등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선수는 제외한다)

대법원 판결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관례는

『(1)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48조 제2호는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2) 한편 위 법 제47조 제1호는 ‘제1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승부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전문체육 운동경기에 대한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동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 내용과 제14조의3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755 판결)고 판시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운동 선수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경우,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